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28 선고 2022가단10901 판결 [구상금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피 고 F

변 론 종 결 2022. 10. 14.

판 결 선 고 2022. 10. 28.

주 문

1.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85,678,938원 및 그 중 122,166,682원에 대하여 2022. 4. 1.부터 2022. 7. 27.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1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C은 원고와 사이에, 보험가입금액 300,000,000원, 피보험자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보험기간 2011. 9. 30.부터 2016. 9. 29.까지, 가맹계약 특별지원 장려금 약정에 다른 반환채무 지급보증을 내용으로 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르면, 원고가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피보험자에게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C은 원고에게 그 지급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지급일 다음날부터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째가 되는 날까지는 연 6%, 그 이후부터는 연 9%이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1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부분연대보증하기로 하였다.

라. 그 후 C은 소외 회사에게 외상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소외 회사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마. 원고는 2017. 9. 29.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에게 보험금으로 204,166,682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C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1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부분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일부 변제하고 남은 구상금 185,678,938원 및 그 중 원금 122,166,682원에 대하여 2022. 4.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인 2022. 7. 27.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되, 부분연대보증액 1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미경